

유진저축은행 「ISA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ISA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ISA 정기예금」
- 상품특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가입금액	■ 최저 1만원 이상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ISA 취급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적용이율 등 (세금납부 前)	■ 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¹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 주1)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 (원미만 절사) ■ 원금×{(1+이율/12) ⁿ -1} (n은 경과월수)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
자동재예치	■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자동재예치 ■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예금자보호여부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ISA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347 371 1449 698"> <thead> <tr> <th>예치기간</th> <th>이 율</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미만</td> <td>보통예금 금리</td> </tr> <tr> <td>1개월이상 ~ 6개월미만</td> <td>약정이율 × 50%</td> </tr> <tr> <td>6개월이상 ~ 9개월미만</td> <td>약정이율 × 55%</td> </tr> <tr> <td>9개월이상 ~ 12개월미만</td> <td>약정이율 × 60%</td> </tr> <tr> <td>12개월이상</td> <td>약정이율 × 70%</td> </tr> </tbody> </table>	예치기간	이 율	1개월미만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이율 × 50%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약정이율 × 55%	9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이상	약정이율 × 70%
예치기간	이 율												
1개월미만	보통예금 금리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약정이율 × 50%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약정이율 × 55%												
9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이상	약정이율 × 70%												
특별중도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중도해지 사유 <table border="1" data-bbox="395 833 1401 1205"> <thead> <tr> <th>특별중도해지 사유</th> <th>적용이율</th> </tr> </thead> <tbody> <tr> <td>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td> <td rowspan="3">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td> </tr> <tr> <td>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td> </tr> <tr> <td>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td> </tr> <tr> <td> 신탁보수 취득 </td> <td> 가입당시 약정이율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분할 지급 (분할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 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 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3 |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유진저축은행 고객센터(1544-67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ugenebank.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